

서로 교환하며,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이종통화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4. “금융선물 관련거래”라 함은 금융선물거래소 이외에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스왑거래, 선도금리계약거래, 통화옵션거래, 이자율상한계약거래, 이자율하한계약거래, 선물환거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일요일,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6. “발효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스왑거래의 발효일로 지정된 날로서 최초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7. “종료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스왑거래의 종료일로 지정된 날로서 최종 이자계산기간의 말일을 말한다.
8. “거래기간”이라 함은 스왑거래의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종료일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9. “계약금액”이라 함은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확인서에서 계약금액으로 지정된 금액을 말한다.
10. “이자계산기간”이라 함은, 최초 이자계산기간의 경우 발효일로부터 최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그 이후 이자계산기간의 경우 각 지급일로부터 다음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최종 이자계산기간은 종료일까지로 한다.
11. “지급일”이라 함은 거래처와 은행간에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을 수수하기로 거래확인서에서 약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되, 그 다음 영업일이 익월로 되는 때에는 당해 지급일 직전의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
12. “이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 가. 각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약정된 이자금액
 - 나. 이자금액이 약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text{이자금액} = \text{계약금액} \times \text{지급금리} \times \text{일수계산기준}$$
13. “일수계산기준”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화는 실제경과일수/365, 외화는 실제경과일수/360”으로 한다. 단, 경과일수 계산시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은 포함하되 종료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지급금리”라 함은 이자계산기간과 관련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지급금리로 표시된 연율을 말한다.
15. “시장금리”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외화 시장금리로 지정된 LIBOR 연율로서, 각 이자계산기간 초일의 2 런던 영업일전 런던시간 오전 11시 현재의 금리로서 텔레레이트(Telerate) 3750화면(또는 그 대체 수단)에 고시된 금리를 말하고, 원화금리란 각 이자계산기간 초일의 1 영업일전 서울시간 오후 3시 30분 현재의 금리로서 체크(CHECK)단말기 3220화면 (또는 그 대체수단)에 고시된 금리를 말

한다.

16. “해지결제금액”은, 해지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해지통화로 표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은행이 해지거래 체결 당시 조건으로 해당 해지거래에 대한 대체거래를 하거나 대체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또한, 해지결제금액은, 이 약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기해지 사유에 의한 해지를 제외하고, 해지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 및 인도에 따른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한다. 해지결제금액은, 해지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은행이 대체거래를 위하여 수취하여야할 금액의 추정치에 근거하여(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거래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것이며, 해지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감안한다. 은행은 고객에게 해지결제금액의 계산 명세서를 제공한다.
17. “해지통화”라 함은 스왑거래의 해지시 지급될 통화로서, 해지결제금액은 양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서 정해진다.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통화는 원화로 한다.
18. ”조기해지일자”라 함은 이 약정서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약정서에 따라 기체결된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해지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제 2 조 스왑거래의 이행

- ① 통화스왑거래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이 약정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일 및 종료일에 계약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각 당사자는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1조제12호에 따라 계산된 이자금액을 지급일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 상호간의 지급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지고 양자의 지급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에는 양자의 지급금액의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이행기가 도래되고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금융선물 관련거래에 관한 모든 지급에 관하여 양자의 지급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지급 등의 방법

본 약정서상의 모든 지급은 지급일에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계좌 또는 이행장소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당해 통화의 지급에 관한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당사자는 지급예정일의 5영업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지급을 받을 계좌 또는 이행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 또는 이행장소의 변경은 상대방이 상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통지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진술 및 보증사항

거래처는 이 약정일 현재에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함을 보증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증은 이 약정서에 따른 각 스왑거래일자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거래처가 본 약정서와 각 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다.
2. 본 약정서와 각 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부 승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
3. 본 약정서와 각 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거래처나 거래처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본 약정서와 각 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3자의 승낙 및 정부의 인·허가를 유효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승낙 및 인·허가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5. 본 약정서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이다.
6. 이 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사유 및 제6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않으며, 본 약정서와 각 스왑거래를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로써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도 아니한다.
7. 본 약정서의 적법·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처의 재무상태 또는 본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청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절차가 제기될 우려도 없다.
8. 본 약정서 및 각 스왑거래는, 관련 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기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특정 자산 및 부채를 헷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행되어야 한다.

제 5 조 채무불이행

① 거래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1. 본 약정서상의 일체의 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의무라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사실을 은행이 통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본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타 해지사유 발생시

의 통지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본 약정서상의 기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약정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오도한 경우
4. (i) 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된 본 약정서 및 연결약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금융선물 관련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련 통지 또는 유예기간의 경과 후 당해 금융선물 관련거래가 청산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ii) 위 통지 또는 유예기간의 경과 후 최종 지급일이나 당해 금융선물 관련거래의 해지로 인한 지급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통지 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이 3 영업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및 (iii) 거래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를 포함하여 위 금융선물 관련거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5. 거래처가 제13조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또는/및 보증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처 또는 거래처의 보증인이 본 약정서 및 금융선물 등 관련거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이외의 다른 금전채무를 은행에 대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거래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에 따라 **파산,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제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이러한 절차를 제기한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기각 또는 각하되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9.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거래처 대하여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채무불이행 사유와 조기해지일자를 명시하여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제 6 조 기타 계약해지

① 거래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1. 스왑거래의 체결 이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법원 또는 관할기관의 규칙의 제정 또는 해석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당해 스왑거래에 관하여 지급, 수령 또는 기타 이행을 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
2. 거래처의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은행이 거래처에

대한 신용을 분석한 결과 신용악화로 추가대출불가 또는 기존대출축소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사유가 동시에 본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계약해지사유로 보며 채무불이행사유로 보지 않는다.

3. 양자는, 불가항력의 이유로 또는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예, 자연재해, 전쟁, 폭동, 재난참사, 정부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 본 약정에 따른 지급, 영수 또는 계약 인도의 의무(확정이된 또는 불확정적인)를 이행해서는 안되며 (또는 양자가 불가피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본 약정의 다른 중요 조항을 이행해서는 안된다 (또는 양자가 불가피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는 그러한 이행 또는 계약 조건의 준수가 특정한 시점에 이행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 또는
4. 거래처가 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래처의 신용악화(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 재무상태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등 은행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분석 결과에 따라 은행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근거로 하는 거래의 조기상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거래처는 이를 알게 된 즉시 당해 사유 및 관련 스왑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이 당해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거래처는 본조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본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은행이 인지한 날 또는 본조 제②항에 의하여 거래처로부터 통지받은 날중 앞선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영향을 받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본조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 해당 해지사유 및 조기해지일자를 통지함으로써 본 약정서상의 모든 스왑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 해지시의 정산

- ①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유의 발생으로 본 약정에 따라 체결된 스왑거래의 조기해지일자가 정해지는 경우, 은행이 거래처와 체결한 모든 거래는 해지된다. 또한, 스왑거래가 해지된 경우, 본 약정서상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지된 스왑거래에 관하여 제2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 ② 본 약정에 따라 지정된 각 조기해지일에 은행은 각 조기해지일에 해지된 모든 거래에 대한 해지결제금액의 누계합계금액인 차액결제금액(이하 “차액결제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 ③ 제15조에 의거, 은행에게 적용되는 상계의 적용권한에 따라 해당 결제일에 차액결제금액이 양의 수인 경우에는 은행이 동금액을 거래처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음의 수인 경우에는 거래처가 은행에게 당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은행 또는 거래처가 차액결제금액을 완납할 때, 제21조에 따른 배상을 제외하고는, 종료된 거래에 대한 은행과 거래처의 모든 의무사항은 모든 측면에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지급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제 8 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거래처는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정 또는 본 약정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거래처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약정 또는 본 약정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제출서류

거래처는 본 약정서에 의한 스왑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은행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1. 은행이 제공한 것으로써 적절하게 작성된 거래 확인서 사본
2. 외국환거래규정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3.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 10 조 약정통화

- ① 법원의 판결 또는 해지시의 정산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약정된 통화(이하 “약정통화”라 한다)이외의 통화(이하 “지급통화”라 한다)로 지급 또는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지급통화를 약정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당해 지급 또는 상환일의 약정통화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또는 매입율)에 따르기로 한다.
-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약정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약정통화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부족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약정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약정통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초과금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③ 본조 제2항에 따른 부족 금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채무는 본 약정서에 의한 지급채무와는 별도의 독립 채무가 되어 본 약정서와 거래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

제 11 조 스왑거래의 체결방식

- ① 각 당사자가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스왑거래의 조건에 합의한 시점부터 스왑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처는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은행이 정한 양식의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이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거래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스왑거래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해당 스왑거래의 조건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한다.
- ② 거래확인서는 양 당사자가 팩시밀리 전송본을 포함한 부분에 서명함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텔렉스 또는 전자통신수단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12 조 금액의 산정 및 통지

은행은 각 지급일에 적용되는 이자금액을 계산하고, 거래처에게 각 지급일에 지급일, 이자계산기간,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및 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은행은 계산 목적상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이러한 계산의 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이행보증금 등

- ① 거래처는 은행과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의 신용측정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거래처와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비율, 예치기간 및 예치방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치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은행은 거래처가 본 약정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은행의 채권회수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은행은 거래처와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처의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계약보증금 이외에 보증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거래처가 본 약정서상의 채무 또는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이 제공받은 보증 또는 기타 담보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여 은행의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4 조 제경비의 상환

거래처는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본 약정서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집행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제경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상계

- ① 본 약정서에 의거, 은행의 어떠한 권리에 손상이 없는 한,
1. 결제일의 도래 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해지로 인해 정산금액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약정이외의 계약, 합의등으로부터 그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 통화, 지급장소 또는 채무를 기표할 지정과 관계없이 서면 통지에 의해 상계할 수 있다.
 2. 위 제1호에서 거래처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사전의 통지없이 거래처를 대리하여 거래처가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처에게 통지한다.
- ② 본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은행이 거래처의 제 예치금, 기타 채권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거래처 및 거래처의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한다.
- ③ 본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이자와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상계실행일의 은행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외국환 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또는 매입율)에 의하기로 한다.

제 16 조 지연이자

거래처가 본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전날까지 국내 외화자금결제은행이 은행에 적용하는 기간별 Over Draft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이자로서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 조 통지

- ① 스왑거래와 관련된 모든 통지와 통신은 본 약정서 말미에 명시된 상대방의 수신처로 구두나 서면, 텔렉스, 팩시밀리, 전자통신수단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 지며,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은행이 거래처에게 서면을 우편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스왑계약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 배달불가능으로 은행에 반송된 때에는 그것이 거래처가 본조 제2항에 의한 수신처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말미암은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거래처는 본조 제1항 기재 수신처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곧 서면으로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18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거래처는 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스왑거래에 필요한 거래처의 대표자, 주소, 인감등과 담당자의 서명을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 ② 거래처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곧 서면으로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은행이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거래처가 본항 기재신고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주장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19 조 조세의 공제와 원천징수

- ① 관련 법규에 정함이 없는 한, 본 약정서 상의 모든 지급은 조세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없이 이루어진다. 일방이 공제 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해당금액전액을 관련 세무 당국에 납부하며, 그 증빙서류를 상대방에게 즉시 전달한다.
- ② 일방이 조세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해당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 20 조 불법 또는 불가항력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기존의 거래가 불법이 되거나, 불가항력 또는 은행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천재지변, 전쟁, 내란, 재해,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경우를 통칭함)으로 인해, 은행이 국내 지점을 통하여 기존의 거래 또는 본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급 또는 거래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홍콩상하이은행 본점 또는 지점은 그러한 지급이나 인도를 대신할 의무가 없다.

제 21 조 면책조항

은행이 거래처가 발송한 서면이나 팩시밀리 통지상의 인영·서명을 거래처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서면·팩시밀리 통지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하며 거래처는 해당 서면이나 팩시밀리 통지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거래처가 은행에 보상해야 할 의무는, 본 약정에 의한 지급 의무와는 별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의 보상 의무는 본 약정 및 거래확인서에 의해 체결된 모든 거래의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 22 조 약정변경 등

- ① 은행이 본 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거래처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통지의 발송 후 30일 이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약정서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은행이 본항 기재 서면통지 시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거래확인서의 변경 또는 당사자의 권리행사 포기는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텔렉스 또는 전자통신수단의 교환에 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기타사항

- ① 본 약정서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다만, 한글본과 다른 언어 번역본 사이에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한다.
- ② 본 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스왑거래에 관한 국내의 법령을 적용하고, 국내의 법령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스왑거래에 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본 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본 약정서가 우선한다.
- ③ 은행은 스왑거래와 관련된 거래처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은행이 본항에 의한 녹음물을 스왑거래 관련 증거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본 약정서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등의 사정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조항만이 무효이고 본 약정서의 다른 조항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정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약정서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거래처가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을 은행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이관 받은 국내 다른 영업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각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 수신처는 다음과 같다.

은행 주소:
텔레팩스:
팩시밀리:
전화:
E-mail :
담당부서/담당자:

거래처 주소:
텔레팩스:
팩시밀리:
E-mail :
전화:
담당부서/담당자:

+